

의안번호	2207473
의 퇴 인	황정아의원
회 답 일	2025.2.19.
추 계 번호	25D0212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교제폭력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수감명령, 교제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병과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2,200만원, 2030년 6억 4,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6억 4,200만원(연평균 5억 2,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안 제24조)	422	470	523	581	647	2,642	528

주: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교제폭력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교제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교제폭력행위의 제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안 제2조(정의 등) 1. “교제 관계”란, 계속적인 반려(伴侶) 관계 또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8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1조(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법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9조(교제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교제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제폭력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교제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제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함(제1항 및 제2항) – 국가는 교제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교제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교제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20조(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2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6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2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교제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교제폭력 신고 등에 대한 응급 조치)	×	미첨부3호: 교제폭력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에 따라 교제폭력 사건은 현장종결하지 못하고 현행범 체포 등 신병을 확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등 신고출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 추계 곤란
2	안 제6조(긴급응급조치)		
3	안 제8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	미첨부3호: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통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고, 현시점에서 긴급응급조치의 건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 곤란
4	안 제11조(교제폭력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	미대상: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시행에 따라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여 즉각 대응하고 있어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법무부 ‘전자감독’사업(2025년 예산액 368억 4,700만원)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24. 12. 말 기준 총 101건 접수, 22건 집행 중, 피해사례 발생 0건
5	안 제19조(교제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미대상: 안 제1항 및 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등에서도 검사, 경찰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여성·청소년범죄 수사관 인력 활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첨부3호: 안 제3항: 교제폭력범죄 수사 관련 교육의 형태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계가 곤란
6	안 제20조(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미대상: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현재 법무부 사업 내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법무부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세부사업(2025년 예산액 2,450백만원)에 교제폭력·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7	안 제2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6항	×	미첨부3호: 제정안에 따른 ‘교제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수와 국선변호사 선정 수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참고로, 법무부 2025년 예산안 기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당을 1건당 25만 8천원으로 편성함
8	안 제24조(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²⁾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라 교제폭력범죄자에게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병과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교제폭력범죄건수에 보호관찰처분비율을 적용하여 보호관찰실시건수를 추정하고, 여기에 보호관찰 등 경비(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보호관찰위원 활동 사례금, 직원 매식비 등)의 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교제폭력 건수) 제정안에 따른 교제폭력 건수³⁾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자료를 참고하여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로 가정하며 연평균 증가율 9.1%를 적용하여 추정

[표 2]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교제폭력 형사입건건수	9,823	8,951	10,538	12,828	13,939	9.1%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3) 실제 교제폭력건수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로 가정

- (처분비율) 교제폭력 건수 대비 보호관찰 등 처분 비율은 현행 가정보호사건의 사례를 유사사례로 참고하여 추정
 - 2019~2023년 가정보호사건의 전체 건수 대비 보호관찰 등의 처분 비율은 27.4%(30,095건÷110,030건)임

[표 3] 가정보호사건 처리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보호 처분	1호 접근행위제한	58	39	31	71	39	238
	2호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3	1	2	—	1	7
	3호 친권행사제한	—	—	—	—	—	—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	3,056	2,890	2,208	2,751	2,628	13,533
	5호 보호관찰	1,843	1,610	1,357	1,876	1,660	8,346
	6호 감호위탁	—	—	—	—	1	1
	7호 치료위탁	103	168	116	97	164	648
	8호 상담위탁	5,751	4,719	4,803	5,736	6,376	27,385
	1·5호	31	28	26	22	12	119
	3·5호	—	—	—	—	—	—
	4·5호	1,287	923	822	997	787	4,816
	5·8호	605	520	594	804	758	3,281
	기타	623	457	524	689	648	2,941
	불처분	9,578	8,128	8,603	11,756	9,454	47,519
타법원으로 이송		177	206	220	270	248	1,121
기타		24	26	15	5	5	75
합계(A)		23,139	19,715	19,321	25,074	22,781	110,030
4호 및 5호 처분(B)		6,822	5,971	5,007	6,450	5,845	30,095
보호관찰 등 처분 비율(B/A)		—	—	—	—	—	27.4%

자료: 대법원 사법연감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실시건수 비율) 제정안에 따른 보호관찰 등의 처분건수 대비 실시건수 비율($173.6\% = 1,250,884\text{건} \div 720,570\text{건}$)은 2019~2023년 보호관찰 등(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건수를 처분건수로 나누어 추정

[표 4] 보호관찰 등 처분건수 및 실시건수: 2019~2023년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보호관찰 등 처분(접수)건수	151,961	157,109	106,256	152,143	153,101	720,570
보호관찰 등 실시건수	228,975	232,591	266,531	271,523	251,264	1,250,884

주: 법무부는 보호관찰 등 처분(접수)건수와 실시건수가 다른 이유로 접수된 이후의 해에도 보호관찰이 실시 중인 경우 해당연도의 실시건수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자료: 법무부 2024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보고서,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단가) 보호관찰 등 실시건수별 비용단가는 법무부 “보호관찰활동” 세부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5개년도(2019~2023년) 집행단가 평균값인 49천원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표 5] 보호관찰 등 실시건수별 경비 단가 추정: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집행액(A, 백만원)	11,710	10,691	12,147	12,713	13,986	12,249
보호관찰 등 실시건수(B, 건)	228,975	232,591	266,531	271,523	251,264	250,177
실시건수별 집행액(A/B, 천원/건)	51	46	46	47	56	49

자료: 법무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에 따라 형벌과 보호관찰 등의 병과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2,200만원, 2030년 6억 4,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6억 4,200만원으로 예상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교제폭력 건수(A, 건)	18,101	19,748	21,545	23,506	25,645	—
보호관찰 등 처분 비율(B, %)	27.4	27.4	27.4	27.4	27.4	—
보호관찰 등 처분건수 대비 실시건수 비율(C, %)	173.6	173.6	173.6	173.6	173.6	—
보호관찰 등 실시건수별 집행액(D, 천원)	49	50	51	52	53	—
추가재정소요(A×B×C×D, 백만원)	422	470	523	581	647	2,642

주: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2019~2023년 보호관찰 등 실시건수 대비 사업 집행비용단가는 증감추세가 뚜렷하지 않아 5개년도 평균값을 적용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